

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안 제9조제2호, 제3호, 제5호를 삭제한다.

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안 제11조제1항, 제3항을 삭제한다.

안 제12조를 삭제한다.

**<수정안 조문 대비표>**

현 행	개정안	위원회 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<신 설>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“반려견 놀이터”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&lt;삭 제&gt;</u>
<신 설>	제9조(동물의 관리 등)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 할 수 있는 비닐봉지,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	제9조(동물관리 등) (개정안과 같음) 1. (개정안과 같음)

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.

## 2.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

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도록 2m 이내로 한다.

## 3. 소유자 등이 「동물보

호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4. 사육·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5.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

택,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소유자 등은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끝부분 목걸이를 잡아

## 2. <삭 제>

## 3. <삭 제>

2. 사육·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5. <삭 제>

	야 한다.	
<신 설>	<p>제10조(길고양이의 관리 등)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. 단, 장마철 · 혹서기 · 혹한기 등의 기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를 동물보호단체,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길고양이의 관리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&lt;삭 제&gt;</p> <p>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를 동물보호단체,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.</p>
<신 설>	<p>제11조(동물보호명예감시원) ① <u>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·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(이하 “명예감시원”이라 한다)을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명예감시원에게는 명예감시원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</p>	<p>제11조(동물보호명예감시원) ① &lt;삭 제&gt;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
	<p>수 있는 증표(조끼, 완장 등)가 되는 것들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</u></p>	<p>③ &lt;삭 제&gt;</p>
<신 설>	<p><u>제12조(반려견 놀이터 설치 ·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 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
제9조 ~ 제12조 (생략)	<p><u>제13조 ~ 제16조 (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</u></p>	<p><u>제12조 ~ 제15조 (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</u></p>